

漂海錄의 전통에서 본 『海外聞見錄』의 위상과 가치

김용태*

목 차

1. 머리말
2. 자료 개관
3. 宋廷奎의 관료적 삶과 ‘實用爲主’의 학문 경향
4. 『해외문견록』에 담긴 저술의식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海外聞見錄』은 宋廷奎(1656~1710)가 1704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저술한 漂海錄이다. 『해외문견록』에는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제주에서 발생하였던 표류 관련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존의 표해록이나 여타 자료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풍부히 담겨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1611년에 발생하였던 이른바 ‘유구(오끼나와) 왕자 살해설’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에서 일본 측에 보내는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외교문서는 다른 어느 자료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또 1653년 발생하였던 ‘하멜 표류’와 관련해서는, 송정규가 제주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하멜 일행의 무기류를 직접 살펴보고 그 특징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해외문견록』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밖에 『해외문견록』에는 중국 선박의 구조에 대한 치밀한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고, 중국 남부, 베트남, 일본, 대만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국제 무역의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당시 조선은 민간의 해외 무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송정규가 이러한 저술을 하였던 것은, 언젠가는 해양의 시대가

*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kyt9155@daum.net

열릴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송정규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송정규의 해안은 朴齊家(1750~1805)가 『北學議』(1778)를 저술하여 해외 통상을 주장하였던 것보다 수십년을 앞선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학계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해외문견록, 송정규, 표해록, 하멜, 유구왕자살해설

1. 머리말

『海外聞見錄』은 숙종대에 활동했던 관료문인 宋廷奎(1656~1710)가 제주목사 시절에 저술한 책으로, 그 내용은 제주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표류 관련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해외문견록』에는 표류와 관련하여 다른 기록물들에 보이지 않는 흥미로운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사건을 기록하는 송정규의 작가의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한다는 차원을 넘어 ‘실학’과도 연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그 사상성 또한 매우 높다. 이처럼 『해외문견록』은 매우 주목할 만한 문헌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 가치에 걸맞게 활용되지 못했다.¹⁾ 본고의 소개를 계기로 『해외문견록』이 海洋史와 思想史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해외문견록』이라는 책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南克寬(1689~1714)의 시화집인 『謝施子』의 다음 구절을 통해서였다.

1) 필자는 본고의 내용을 2011년 6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한문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 6월 17일자 문화면에 소개되었다. 발표회장에서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김영진 교수는 송정규의 종조카 宋瓚이 송정규의 행장을 지었다는 사실과 송정규는 정치적으로 小北계열에 속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 김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송정규의 문장은 眉叟 許穆을 배웠으나 다소 유창한 경향으로 흘렀다. 송정규는 『해외문견록』을 찬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안남의 풍속이라든가 복건성 선박의 제도를 기록한 부분은 문자가 빼어나고 정밀하여 우리나라에 드물게 있는 글이다.²⁾

이 기사에서 남극관은 송정규의 문장을 일정하게 高評하는 맥락에서 『해외문견록』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기사에서 『해외문견록』이 안남의 풍속과 중국의 선박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는 대목에 큰 흥미를 갖게 되어 조사를 해보니 국립중앙도서관에 『해외문견록』이라는 표제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었다. 저자가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海外聞見錄 / 複寫本 / 國立中央圖書館, 1991 / 不分卷1冊(86張) : 四周單邊, 半廓 19.8 x 13.0 cm. 有界, 9行 22字, 無魚尾; 24.7 x 15.5 cm / 원본소장기관: 日本 天理大學 今西文庫所藏(0929-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외문견록』은 원본이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 복사본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서지사항의 ‘今西文庫所藏’이라는 기록과 『해외문견록』에 찍힌 ‘今西龍’ 인장을 통해, 이 자료가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일본인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의 컬렉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천리대 소장 『해외문견록』의 다섯 번째 기사인 『記安南漂還人事』를 보면, “갑신년(1704) 가을 나는 탐라에 왔다(甲申秋, 余至耽羅)”라는 구절이 보이고, 『승정원일기』 숙종30년(1704) 5월 17일자 기사에는 “송정

2) 南克寬, 『夢嚙集』 坤, ‘雜著’, 『謝施子』 “宋廷奎文, 學許眉相, 而稍趨流暢. 撰『海外聞見錄』, 其中記安南國俗·福建船制, 文字奇雅精妙, 東方所罕有也.”

규를 제주목사로 임명한다(以宋廷奎, 爲濟州牧使)”는 기록이 나오므로, 천리대 소장 『해외문견록』은 곧 송정규가 지은 『해외문견록임』이라고 확정지을 수가 있다.

본고는 『해외문견록』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지면이므로, 『해외문견록』의 자료적 성격을 개관하고 송정규에 대한 작가론을 전개한 바탕 위에서 『해외문견록』의 위상과 가치를 여타 표해록들과 견주어 가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해외문견록』이 지닌 사상사적 의의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개관

『해외문견록』에는 모두 16則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사에는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은 제목이 달려 있다. 16개 기사의 제목과 대략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내용	비고
1	別刀剿倭	1611년 제주목사 李箕賓이 '倭船'을 나포하여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	'琉球王子殺害說' 관련 내용
2	琉球使者	1612년 유구의 사신들이 탄 배가 제주에 표착했던 사건.	『芝峯集』 권9, 『琉球使臣贈答錄』 중 '問答' 관련 내용.
3	西洋漂蠻	1653년 하멜이 제주에 표착했던 사건.	
4	順治以後漂商問答	1652년부터 1705년까지 있었던 중국 상인들의 제주 표착 사건.	『知藏錄』과 많이 겹치는 내용임.
5	記安南漂還人事	1688년 제주사람 金泰璜(※金大璜) 등이 안남에 표류했던 사건.	『知藏錄』, 『晝永編』 등에도 수록.
6	唐船制	작자가 직접 탐문하여 중국 배의 제도에 대해 소개함.	다른 자료에 없는 내용.

7	山東漂商	1706년 山東人 車瑄 등이 제주에 표착했던 사건.	『실록』에 없고, 『비변사등록』에 보임.
8	記日本漂還人語	1706년 濟州書員 李繼敏 등이 나가사키에 표류했던 송환된 사건.	다른 자료에 없는 내용.
9	記琉球漂還人語	1663년 金麗輝 등이 오키나와에 표착했다 일본을 통해 송환된 사건.	成海應, 『蘭室譚叢』,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언급.
10	崔錦南漂海錄節略	崔溥의 『漂海錄』 節錄.	가장 긴 분량 (절반을 할애함)
11	官吏漂海	역대 관원의 신분으로 표류했던 인물들 정리.	
12	記壬乙倭變	1552년, 1555년 왜변에 대한 기록.	
13	吉雲節	鄭汝立 역모 사건과 관련하여 참형에 처해진 길운절 이야기.	
14	金萬鎰牧師	제주에서 말을 잘 길렀던 金萬鎰 소개.	『林下筆記』에 보임.
15	徐判官斬蛇	徐隣이 제주 이무기를 퇴치한 전설 소개.	
16	洪墟宮基	한라산 남쪽의 洪墟縣를 옛 궁궐터로 추정.	

이 가운데 1~9번까지의 기사는 이 책이 저술된 1705년 무렵과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표류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10번 이하는 제주와 관련된 옛 사적을 雜錄하고 있기에 10번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문견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 성격이 나뉜다. 그런데 자료적·사상사적 가치는 주로 전반부에서 찾을 수 있고, 후반부는 부록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해외문견록』에 실린 전반부 기사 내용들을 여타 史料 및 표해록류와 비교 검토하여 『해외문견록』의 자료적 가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번 ‘別刀剿倭(별도포산에서 왜선을 노략질하다)’는 학계에서 그 진위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琉球王子殺害說’과 관련된 내용이다. ‘유구왕자살해설’이란 제주목사 李箕賓이 제주에 표착한 유구의

배에 실린 보물에 눈이 멀어, 배에 타고 있던 (유구) 왕자를 살해하고 그 보물들을 훔쳤다는 것이 그 개략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마쓰바라 타카토시(松原孝俊)는 이기빈이 왜선을 노략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구왕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후대의 ‘傳說’이라고 보고 있고,³⁾ 박현규는 당시 사츠마번이 유구를 침공했던 사실에 근거하여 ‘살해설’을 사실로 보고 있는 등⁴⁾, 그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⁵⁾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광해군일기』 4년(1612) 2월 10일 기사에는 유구왕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유구왕자살해설’이 널리 퍼진 인조 대에 들어와서도 『인조실록』 1년(1623) 4월 14일 기사를 보면 李元翼은 살해설이 사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 이처럼 사건 관련 초기 기록들은 ‘유구왕자살해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후 ‘유구왕자살해설’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李重煥이 『擇里志』(1751)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어 金鑣의 『琉球王世子外傳』과 같이 ‘傳’의 제재가 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외문견록』은 『택리지』보다 훨씬 앞선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

3) 松原孝俊(1991).

4) 박현규(2001) 참조. 김동욱(2004)도 박현규의 견해를 따라 살해설을 사실로 보았다.

5) 하우봉(2002), 293면; 민덕기(2001), 98면에서는 사실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기록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6) 『인조실록』 1년(1623) 4월 14일자 기사는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중국에 알리는 奏文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논의는 당연히 광해군의 ‘폐륜’에 대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폐륜 행위 가운데 하나로 ‘유구왕자살해’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유구왕자살해설’이 최초로 등장하는 자료는 바로 이 『인조실록』의 기사인데, 그 논의의 자리에 있던 이원익조차 신빙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광해군의 폐륜을 부각하기 위해 ‘유구왕자살해설’을 확대 재생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목을 요한다. 특히 『해외문견록』이 주목되는 까닭은 앞서 언급한 『광해군 일기』 4년(1612) 2월 10일 기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膽送文書’⁷⁾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타의 자료에 없는 내용이므로 다소 길더라도 ‘문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만력39년(1611) 신해년 8월 왜선 한 척이 제주를 경유하여 화탈도를 향해 갔다. 목사 이기빈과 판관 문희현 등은 병선을 동원하여 추적한 뒤 역관을 시켜 물으니, “일본 사즈마 대장군 沈安道⁸⁾ 휘하의 장관이 임무를 띠고 안남국에 새로이 和好를 통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며 문서를 한 통 보여주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安南國·布政州·右奇副將·北軍都督府·華郡公이 日本貴國·薩隅日三州太守·藤原家 대장군에게 보냅니다. 무릇 이웃 나라의 통호를 이루려면 마땅히 신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귀국은 인물이 뛰어나고 물산이 풍부하며 재화가 진귀하여 천하에 명성이 자자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미상불 기쁘게 흠모하며 통교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상인이 표류하여 마음에 매우 불쌍히 여겨 布政尙父·平安王⁹⁾에게 아뢰어 배를 수리하여 송환

7) 실록의 해당 기사는 연전(1611년)에 이기빈이 왜선을 불살랐다고 하여 軍功을 시행하였으나, 실은 그 배에 중국인도 타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져, 사헌부에서 이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其不念國家事大、交隣之義、貪功黷貨、恣意欺罔、一至於此、將來之禍、有不可測。況其膽送文書、既非正本、不可取信、而以‘我有方物、遣人贈來貴國’等語觀之、安南人通往日本、則已有可據之端”라는 대목이 있다. 실록만 보아서는 ‘膽送文書’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려운데 그 문서가 『해외문견록』에 실려 있는 것이다.

8) ‘심안도’는 사즈마의 다이묘로서 임진왜란에도 참전하였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535~1619)를 지칭한다.

9) 평안왕은 베트남의 ‘남북조시기’ 黎 왕조의 부흥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던 ‘전똥’(鄭松, 1550~1623)을 가리킨다. 전똥은 黎 왕조에 반기를 들었던 莫氏를 축출하는데 큰 공을 세워 1599년 黎 왕조의 世宗으로부터 ‘平安王’이라는 작호를 받고서 베트남 북부의 실질적 군주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유인선(2007), 204~206면 참조.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만 교린의 한 가지 일일 뿐이니 어찌 족히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대장군께서는 도량이 넓으시어 인물을 후히 접대하시고 다른 나라를 존중하시며 멀리서 온 빈객을 소중히 대접하시고는 사신이 돌아감에 미처 진귀한 보물을 후히 주시었으니 끼친 은혜가 크고도 귀합니다. 또한 문서에 기록된 장군의 말씀은 참으로 나의 뜻과 합치됩니다. 함께 맹서를 지켜 변치 말아 상인이 내왕하면 해마다 재화가 산처럼 쌓이고 샘처럼 솟으리니 이는 양국에 만세의 이로움이 될 것입니다.(…중략…)”

이는 대개 안남이 일본에 보내는 화친의 문서였으며 일본은 이번에 또한 報聘하는 길이었다.(…하략…)¹⁰⁾

아마도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이기빈은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조정에 올렸는데, 실록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실리지 못하고, 제주 관아에 그 부분이 남아 전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¹¹⁾ 일단 송정규는 그 문서를 토대로 이기빈이 불사른 배가 유구의 배가 아니라 왜선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¹²⁾

10) 『別刀剿倭』, “萬曆三十九年, 辛亥八月, 倭船一隻, 經濟州, 向火脫而去. 牧使李箕賓 令判官文希賢等, 領兵船追及, 使譯問之, 答曰, 以日本薩摩州大將沈安道標下將官, 差往安南國, 新通和好者也. 投示一幅書, 略曰, 安南國布政州, 右奇副將北軍都督府華郡公, 復書日本貴國, 薩隅日三州太守藤原家大將軍曰, 凡欲成隣國通好, 當以信義爲先, 且貴國人豪產厚, 貨異物珍, 有聲於天下久矣. 我未嘗不欣然欽慕, 欲與交通, 曩因日本商人戒忽衣衾, 心甚可悶, 恭稟布政尙父平安王, 整治船艘, 使人送還, 此特交隣一事耳. 曷足以爲惠乎. 不意, 大將軍, 量廣度弘, 人容物接, 珍重異國, 金玉遠賓, 逮使人回, 厚贈以珍, 餘波, 宏大且貴, 官書中, 具述大將軍寄言, 正合我意. 共守盟誓, 磨而不磷, 販商徠往, 年歲財貨, 浩若丘泉, 寔兩國萬世之利也…… 盖安南通好日本之書, 而日本今又報聘也.”

11) 16세기말 일본은 朱印船제도를 통해 활발히 교역에 나서 베트남의 호이안(會安)에는 일본인 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유인선(2007), 226면 참조.

2번 ‘琉球使者’는 李睟光의 『芝峯集』 권9, 『琉球使臣贈答錄』중 ‘問答’에 실린 유구의 사신 馬喜富 관련 기록과 동일한 내용이다. 馬喜富 일행은 유구의 사절로서 중국에 入貢하기 위해 1610년 유구를 출발해 1611년 9월에 북경에 당도하여, 마침 동지사 겸 주청사절단의 副使로 와있던 이수광 일행과 교류하였으며, 1612년 2월 중국을 출발하여 유구로 돌아가던 중 역풍을 만나 제주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수광의 기록이 事後에 傳聞을 통해 기록한 것이기에 매우 간략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유구사자’는 보다 현장감을 높인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만력 40년 임자년(1612) 7월에 유구의 배 2척이 대정현의 모슬포로 표류하여 이르렀는데 그들 가운데 8명이 작은 배를 타고 물에 내려 뿔갑과 물을 구하였다. 그때 관관 李廷臣과 대정현감 韓繼咸이 말을 달려 언덕 위에 이르러 그들을 불러 문정할 즈음에 戰船 2척이 급보를 듣고 당도하자 저들의 배가 그것을 보고는 창황히 닻을 들어 도주하였다. 버려진 8명 가운데 馬喜富라는 자가 있어 자못 漢語를 할 줄 알았다……(중략)…… 마희부가 또 말하였다. “북경에 있을 때, 조선 사신 李尙毅, 李睟光, 黃敬中 등과 여러 날 우하관에서 함께 거처하였습니다.”¹³⁾……(하략)……

여기에서 흥미로운 비는 유구의 배가 조선 수군의 접근을 보고서 자신들의 동료를 내버리면서까지 도주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유구의 배

12) 鄭東愈의 『晝永編』에 수록된 ‘김대황 표류기’와 張漢喆의 『漂海錄』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안남의 왕자를 살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기빈이 불사른 배에는 안남의 고위인사가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3) “萬曆四十年壬子七月, 琉球船二隻, 漂到大靜之毛瑟浦, 其中八人, 乘小船下陸, 求薪水. 其時判官李廷臣與大靜縣監韓繼咸, 馳至岸上, 招進問情之際, 戰船二隻, 聞警而至, 彼船見之, 倉皇擧碇而走. 落留八人中, 有馬喜富者, 頗解漢語……喜富又言, 在北京時, 與朝鮮使臣李尙毅·李睟光·黃敬中等, 累日同處於玉河館……”

가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혹여 1611년 이기빈이 ‘왜선’을 불살랐던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봄직하다. 이기빈의 만행이 유구 등 인접국에 알려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조금 더 상상을 덧붙여 본다면, 1611년 이기빈의 ‘왜선’ 침탈과 1612년 유구 배의 도주 사건이 人口에 전파되는 와중에 착종이 일어나 ‘유구왕자살해설’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3번 ‘西洋漂蠻’은 1653년 제주에 표착한 하멜 관련 기록이다. 하멜의 표류와 관련한 우리 측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이 주로 활용되고, 사찬기록류로는 鄭載崙의 『公私見聞錄』, 鄭東愈의 『晝永編』, 金錫翼의 『耽羅紀年』, 李益泰의 『知瀛錄』이 成海應의 『蘭室譚叢』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난실담총』에는 하멜 일행의 난파선에 실려 있던 기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특히 주목되는데, 기실 『난실담총』은 『해외문견록』의 ‘서양표만’을 축약한 것이다. “서양표만”은 다른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는 하멜 일행의 技術과 무기류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 특히 주목을 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번 ‘順治以後漂商問答’은 1652년부터 1705년까지 있었던 상선의 제주 표착 사건들을 종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1652년 蘇州人 苗珍實 등의 표류’, ‘1667년 福建人 林寅觀 등의 표류’, ‘1670년 광동인 沈三 등의 표류’, ‘1687년 蘇州人 顧如商 등의 표류’, ‘1705년 臺灣 상선의 표류’, ‘1696년 倭船의 표류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도순으로 가장 뒤에 속하는 1696년 왜선의 표류와 1705년 대만 상선의 표류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선왕조실록』, 『備邊司謄錄』, 『지영록』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順治以後漂商問答’의 후반부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강희 28년(1689)에 朱漢源 등이 북경에 압송되었을 때 禮部에서 지문을 보내기를, “해상무역의 금지령이 이미 풀렸으니 이제부터는 중국의 표류선이 조선에 이르게 되면 북경으로 보내지 말라. 원래 금지된 물화 이외에는 판매 하도록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그 명단과 물품은 사절단을 기다려 모아 예부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뒤로 선박이 파괴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제주에서 직접 고향으로 보냈다. 왜선 가운데 배가 부서져 표류한 경우는 전라좌수영으로 압송하고, 좌수영에서 부산으로 보내어 자기 나라로 가도록 하였다.¹⁴⁾

‘주한원’은 다음에 다룬 5번 ‘記安南漂還人事’에 등장하는 인물로, 베트남에 표류한 제주 사람 金泰璜 일행을 제주까지 데려다 준 중국의 상인이다. 당시 주한원 등은 온갖 고생을 겪으며 김태황 일행을 제주에 데려다 주었으나, 조선 조정에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쌀을 지급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보내버렸다. 이때 청 조정에서는 이른바 ‘遷界令’이 풀리고 ‘展海令’이 내린 만큼, 표류자를 모두 북경으로 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696년 왜선의 표류와 1705년 대만 상선의 표류 사건은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제주관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였기에 실록 등에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1689년 이후의 표류 사건 가운데에는 실록등의 관한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다.

5번 ‘記安南漂還人事’는 위에서 서술한 대로 1687년 제주사람 김태황 등이 말을 진상하기 위해 항해를 하다가 베트남에까지 표류했다가 돌아온

14) “自康熙廿八年，朱漢源等，解送北京時，禮部回咨，以貿易海禁已經停止，嗣後內地漂船至朝鮮者，停其解京。除原禁貨物外，聽從發賣，令其回籍。仍將名籍貨物，俟貢便彙開報部。故是後，非本船破壞者，則皆自本州直送回籍。漂倭之船破者，則押送於全羅左水營，水營替送於釜山，轉達其國云爾。”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晝永編』, 『지영록』, 『耽羅聞見錄』 등의 자료를 통해 학계에 보고가 되었다. 다만 『해외문견록』의 기록은 외국의 선박제도, 사회제도 등에 더욱 적극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이고 있다.

6번 “唐船制”는 『해외문견록』 중에서도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타의 기사들이 대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에 비해, 이 부분은 작자 송정규가 중국 船制를 많이 접해본 제주 사람들을 직접 탐문하여 정리한 것이며, 여타의 자료에서 볼 수 없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7번 “山東漂商”은 1706년 山東人 車瑄이 제주에 표류한 사건을 기록하였다. 이 기사 또한 6번 기사와 같이 송정규가 직접 목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사건은 『비변사등록』에도 자세한 기록이 보이는데 『등록』에서는 청조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 주된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데 비해, 『해외문견록』에는 조세와 구휼과 같은 사회제도에 주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8번 “記日本漂還人語”도 송정규가 직접 목도한 경우로, 1706년 濟州書員 李繼敏 등이 일본 나가사키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사건이다. 여타의 자료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며, 특히 나가사키에 대한 치밀한 묘사와 서술이 대단히 인상적이므로 관련 대목을 소개한다.

하루는 높은 곳에 올라 형승을 구경하였다. 포구는 東西가 40리에 南北으로 30리이며 산세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서쪽에 바다로 나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의 폭은 겨우 1리가량이었으며 그 안쪽은 저절로 큰 호수를 이루고 있었다. …… 호수 주위 400여리를 따라 인가가 연이어 있는데 서남북으로는 漁家가 많고 동쪽 한 방면이 가장 번성하였다. 그 가운데 세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는데 島主의 殿閣이 그 아래에 있었으며 江南館이 그 왼편에 있었다.…… 대로가 남북을 관통하는데 그 길을 끼고 가게가 줄지어 있어 마치 물고기가 떼를 지어 있는 것 같아 조금의 빈틈도 없었으며 모두 2,3층 집으로 삼십 리에 걸쳐 있었다. 강남관은 모두 90채였다.…… 江南寺가 강남관 오른쪽에 있어, 상전이 많이 모여 강남관이 수용할 수 없으면 배를 나누어 강남사에 두었다. 安南館이 북쪽 언덕에 있으니 또한 30채였다. …… 강남관 주변에 倡家가 많았다. 賣淫을 하는 중국 상인들은 창녀의 才色을 따라 가격을 정하는데 그곳 풍속에 이를 일러 ‘銀娃’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장기에는 중국인의 자손들이 많다. 그곳은 銀이 흔해 사고 팔 때 모두 은을 사용하는데 동전도 통용되었다. 동전의 명칭은 ‘通天之寶’로 80문이 은 1전에 해당했다. 쌀 1가마는 우리나라의 7두에 해당하고 가격은 은 6냥이었다. 땀나무가 계수 나무처럼 귀해 은 5냥으로 100근을 바꿀 수 있었다.¹⁵⁾

이 인용문에는 나가사키 항구의 자연 지형이 상세히 묘사되고, ‘강남관’과 ‘안남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나가사키를 통한 국제무역이 성행하였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매우 같은 풍속이나 생필품 가격과 같이 생활과 밀착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남관’에 대한 언급은 당시 일본이 베트남과 상당한 규모로 교역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15) “一日登高，觀覽形勝，浦東西四十里，南北三十里，山勢四圍，西開一口，口闊堦一里許。其內自盛太湖，湖水不深不淺，澄碧徹底，四邊皆泊步，藏船甚穩，……緣湖周四百餘里，人家相連，而西南北多漁戶，唯東一面，繁富爲最，有三峰中峙，島主殿，當其下，江南館在其左，……八條大路，貫通南北，夾路列肆，緝緝如魚鱗，地無寸隙，皆爲二三層閣，如是者三十里。……江南館，凡九十屋，……江南寺，在館右，商舶多集，館不能容，則或分處寺中。安南館在北岸，亦三十屋。……江南館傍，多倡家，漢商之買歡者，隨其才色而定價多少，其俗謂之銀娃。以此長崎多漢人子孫，其地銀賤，凡賣買皆用銀，亦用銅錢，文曰通天之寶。八十文，直銀一錢。米一包，可當我國之七斗，置銀六兩。薪貴如桂，以銀五兩，還百斤。”

있겠다.

9번 ‘記琉球漂還人語’는 1663년 金麗輝 등이 오키나와에 표착했다가 일본을 통해 송환된 사건이다. 여타 다수의 자료에도 기록된 내용이다.

10번 ‘崔錦南漂海錄節略’은 崔溥의 『漂海錄』을 節錄한 것이다. 특별한 원칙에 따라 취사선택을 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개요만을 요령 있게 초록하였다. 그러나 그 분량이 상당하여 『해외문견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1번 ‘官吏漂海’. 역대 관원의 신분으로 제주를 왕래하다가 표류했던 인물들을 정리한 기사로, 1484년 旌義縣監 李暹이 중국 남경에 표류했던 사건, 1607년 대정현감 李瑞龍 일행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모두 죽고 말았던 사건, 1665년 제주목사 金元祥과 군관 許定이 일본에 표류했던 사건, 1691년 대정현감 張厚載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였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실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해외문견록』 소재 표류기록들의 자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표류 관련 연구에서 『해외문견록』이 활발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송정규의 관료적 삶과 ‘實用爲主’의 학문 경향

송정규의 자는 文卿·幼文, 호는 梨湖·迂叟이며 본관은 礪山이다.¹⁶⁾ 그

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礪山宋氏正嘉公派譜』 권5 장111. “廷奎: 字 文卿, 號 梨湖. 文科, 承旨, 江原監事, 清白吏, 孝旌” 참조 『槿域書畫徵』 ‘宋廷奎’ 조를 보면, “字元卿, 號迂叟, 礪山人. 孝宗七年丙申生, 肅宗九年癸亥文科, 官判書. 善書, 書大成殿額(海東號譜)”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자를 ‘元卿’이라 한 것은 ‘文卿’의 오류가 확실한데(행장에도 ‘文卿’으로 되어 있음) 인명사전류 기술이 모두 『근역서화징』을 따라 ‘元卿’이라고 하고 있다.

의 오대조인 宋好智(1474~1526)는 趙光祖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여 기묘당적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고, 증조부 宋駟(1557~1640)은 벼슬이 참판에 올랐으며 정치적으로는 小北系로 분류되는 인물이다.¹⁷⁾ 조부인 宋時吉(1597~1656)은 벼슬이 경기관찰사에 이르렀고, 부친 宋拯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송정규의 후처 전주이씨는 芝峯 李晬光의 증손녀이다. 이러한 가계를 통해 볼 때, 송정규는 상당히 명망 있는 집안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송정규의 생애에 대한 가장 자세한 자료는 송정규의 從姪인 宋瓚(1676~1741)이 쓴 「行狀」¹⁸⁾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행장」을 중심으로 송정규의 생애와 사상적 지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송정규는 병신년(1656) 8월 13일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과거공부에 매진하여 駢文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기미년(1679) 진사시에 합격하고, 계해년(1683) 증광별시에 합격하였는데 이때 시험을 주관한 인물은 남극관의 조부로서 당시 소론을 이끌던 藥泉 南九萬(1629~1711)이었다. 무진년(1688) 黃海道 長連縣監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벼슬길이 시작되어 경오년(1690)에는 司諫院 正言에 뽑혔는데, 이때는 仁顯王后가 廢位되어 私第에 머물고 있던 시절이었다. 송정규는 정언이 되자 상소를 올려 인현왕후를 별궁으로 옮겨 거처하게 하고 옷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의 時諱를 무릅쓴 행동으로 인해 송정규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임신년(1692) 모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른 뒤, 갑술년(1694) 侍講院 司書로 다시 벼슬살이를 이어나갔다. 여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다가 신

17) 『燃藜室記述』 권18, 『宣祖朝故事本末』 참조.

18) 宋瓚, 『恥菴集』 권10, 141면. 『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宋公行狀』, 『치암집』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도서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권10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년(1701)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告訃使(正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이후 몇몇 고을의 지방관을 거쳐 갑신년(1704) 제주목사에 제수되었다. 『행장』에서는 제주목사로서 송정규의 치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은) 제주에서 부역을 중지하고 형벌을 완화하여 은혜와 믿음을 베푸는데 힘을 썼다. 도민들은 기뻐하며 “공이 청렴하고 완고하다고 들었지만 넉넉하고 온화하다”고 말했다. 공은 말하기를 “바다의 섬은 육지와 같지 않다. 나는 덕으로 교화하고 싶다.”고 하고는 공자묘를 중수하여 감실을 설치하고 서적을 보관하였다. 섬의 풍속이 귀신을 좋아하여 집집마다 기도하는 곳을 두었는데 공은 淫祠 79곳을 훼손하고 그곳의 기물들을 무기고에 집어넣었다. 목장을 개축하여 13곳을 설치하고서 백성들이 함부로 경작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니 말들이 살지게 되었다. 堡를 2곳 설치해 萬戶를 두어 요해처를 방비하였고, 포구에 성 300여리를 쌓으니 이익은 커지고 해는 줄었다. 섬에 오래된 문헌이 없어 공이 故實을 수집하고 풍속을 기록하여 탐라지를 만들고 또 탐라지도도를 만들어 살펴보기 편리하게 만들었다.¹⁹⁾

이 인용문에서 보다 주목되는 바는 인용문의 후반부에 ‘탐라지’와 ‘탐라지도’를 편찬했다고 하는 대목이다.²⁰⁾ ‘탐라지’가 『해외문견록』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탐라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해외문견록』도 저술될

19) “在濟州也，罷工作緩刑罰，務施恩信。島民相喜曰，固聞公廉白峻直，而乃更寬和。公曰，海島不竝內地，吾欲以德化之也。重修孔子廟，設龕藏書，島俗好鬼，家有禳，毀淫祠七十餘區，籍其物於武庫，改築牧場，爲十三所，禁民冒耕，馬不瘦損。設二堡，置萬戶，以防要害。築浦口城三百餘里，於利害多所興除。島中舊無文獻，公搜別故實，採訪謠俗，爲耽羅誌，又造耽羅地圖，以便考閱。”

20) 규장각 등에는 목판본 『耽羅地圖』(古軸 4709-87)가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의 말미에는 “康熙己丑正月李等開刊”라고 하는 간기가 있어 1709년에 당시의 제주목사였던 李奎成이 편찬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송정규의 행장에 기록된 내용을 고려해 보면, 혹 『탐라지도』는 송정규가 만든 것을 이규성이 목판에 새겨 간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듯하다.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장』은 이어서 御使 李海朝가 제주에 들러 과거시합을 주관하고 조정에 돌아가 송정규가 제주목사로서 훌륭한 치적을 쌓았다고 보고 하자 이에 숙종 임금은 송정규에게 熟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¹⁾

1706년 제주목사에서 돌아온 뒤에도 송정규는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1708년 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는데, 이때 송정규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1708년 2월 26일 송정규는 강원도로 떠나며 임금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강원도 지역 ‘折受’의 폐단, 즉 토지를 사사로이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아뢰자, 숙종은 이에 절수를 혁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9월 4일자 기사를 보면 송정규는 ‘檢田’은 자신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상소를 올리고, 이에 대해 임금은 송정규의 능력을 칭송하며 속히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 9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영의정 崔錫鼎이 강원도 지역의 ‘量田’을 건의하면서 그 책임자로 송정규를 지목하였다. 이에 강원도의 양전사업은 송정규의 책임하에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시 조정 일각에는 강원도에서 양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송정규를 강원도관찰사로 임명하였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양전 사업은 송정규의 우려대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 『행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힘 있는 자들의 경우 숨겨놓은 땅이 모두 드러나면 원망이 따라 일어나게(在豪右則銀漏盡發 怨讟隨興)” 되고, 이를 기회로 평소 송정규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던 자들이 정치적 공세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록의 12월 13일자 기사에는 獻納 李允文이 송정규를 신랄하게 공박하는 상소문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이윤문의 공박은 결국 이듬해

21) “御使李海朝, 自島還, 上政績于朝. 上教曰, 今觀御使書啓, 爾清約之政, 修弊之舉, 誠爲可尙, 而果木之蕃盛, 馬畜之孳產, 實近來所無. 特賜熟馬一匹以褒之.”

인 1709년 2월 20일 송정규의 하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 의금부에서 송정규와 이운문을 대질조사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건은 이운문의 무고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이운문은 삭탈관직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송정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송정규는 벼슬을 모두 사양하고 고향인 경기도 이천 牛谷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이듬해인 경인년(1710) 3월 13일 향년 55세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행장』은 송정규의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의 학문은 章句의 번잡함은 생략하고 本旨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치를 밝히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고, 문장은 화려한 수식을 버리고 사물을 절실히 표현하여 實用을 위주로 하였다(實用爲主).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이 컸으며, 보지 않은 책이 없었는데 제자백가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세밀히 탐구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다. 수천 권의 책을 모았으니 대개 逸文과 僻書의 종류였다. 특히 문자학에 정밀하여 고문자와 육서의 뜻을 널리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여 한갓 음과 뜻 획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었다. 공은 박람강기하였는데 그 여력이 乘除, 堪輿, 醫藥 등의 분야에까지 미쳐 그 근원을 모두 섭렵하였다.²²⁾

오늘날 송정규의 학문적 저술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송정규의 학문이 성리학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송정규가 실용적 글쓰기를 하고 문자학과 제자백가에 정통하였다는 언급에 특히 주목하게 되는데, 송정규는 실학적 학풍을 지녔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22) “其爲學，略章句之煩亂，究極本旨，以明理爲宗，爲文，去藻績之華靡，切於事類，以實用爲主。蓋不由師資，而透悟自得之力爲多。於書無所不覽，益致力於諸子，穿穴洞貫，無遺漏。蓄書僅累數千卷，類多逸文僻書。精於字學，倉籀之法，六書之旨，悉博究深覷，不徒致辨於音義點畫之譌正。公既博識強記，其餘力所至，乘除堪輿醫藥諸家，亦皆涉其源流。”

과거시험에서 송정규를 발탁하였던 남구만은 송정규의 죽음에 다음과 같은 만시를 지었다.

일찍이 과거시험 답안을 살펴보고서
 재주가 무리 중에 출중함을 알았노라.
 절반도 못간 長途는 가시밭길 같았고
 험담하는 무수한 입, 구름처럼 막았네.
 妻父를 때렸다면 헛되이 第五相을 의심하고²³⁾
 구슬을 실어왔다 한들 어찌 馬將軍에 누가 되랴.²⁴⁾
 평생의 기개가 여기서 끝이 나니
 그대의 높은 뜻, 그 누가 후세에 전하려나.

疇昔曾看試院文，已知才具自超群。
 長途未半行如棘，多口無端蔽若雲。
 搗婦虛疑第五相，載珠何累馬將軍。
 平生氣槩終於此，夙志誰令後有聞。²⁵⁾

23) 第五相은 後漢의 第五倫을 가리킨다. 그는 청렴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한 인물이었다. 데, 사람들이 그가 법을 어긴 장인을 때렸다고 비방하였다. 임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신이 세 번 장가들었으나 모두 아비를 여인 딸이었습니다.” 하였다. 『後漢書』, 『第五倫列傳』 참조 여기서 남구만이 구태여 이 고사를 끌어온 것은, 이윤문이 송정규를 공박한 논거 가운데 하나가 ‘송정규가 아내를 구타하여 사망케 했다’(『속종실록』 34년 12월14일자 기사 참조) 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4) 馬將軍은 후한 때의 伏波將軍 馬援을 가리킨다. 마원이 交趾를 정벌할 때에 항상 울무를 먹고 열대지방의 瘴氣를 이겨내었으므로 교지를 평정하고 환군할 적에 울무를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왔는데, 그가 죽은 후 ‘전에 싣고 돌아온 것이 모두 明珠와 文犀이다.’라고 참조 당하였다. 『後漢書』, 『馬援列傳』 참조. 이는 송정규가 제주목사 시절 보물을 너물로 실어보냈다는 비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25) 南九萬, 『藥泉集』 二, 『宋監司(廷奎)輓』.

이 만사에서 후배의 죽음을 대한 선배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남구만과 송정규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던 사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남극관이 송정규에 대해 高評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조부와의 관련도 작용하였을 것 같다.

4. 『해외문견록』에 담긴 저술의식

1) 경세적 목적을 지향하는 글쓰기 태도

표해록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표류자가 직접 자신의 표류 경험을 저술한 저작」과 「기존에 전하는 표류 관련 자료를 모아 저술한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崔溥의 『漂海錄』을 들 수 있는데, 그밖에 張漢喆의 『漂海錄』, 崔斗燦의 『乘槎錄』²⁶⁾ 등이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해외문견록』은 송정규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저술한 것이므로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저술로서 서로 좋은 비교가 되는 것은 李益泰의 『知瀛錄』과 鄭運經의 『耽羅聞見錄』을 꼽을 수 있다. 『해외문견록』, 『지영록』, 『탐라문견록』은 모두 제주도에서 저술한 것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특징을 간략히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26) 최부와 장한철의 표해록은 비교적 일찍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기에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인데 비해, 최두찬의 승사록은 윤치부(1993)의 소개 이후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 박동욱(2011)에 의해 완역되었다.

제목	작자	저술시기	대상시기	비고
知瀛錄	李益泰(1633~1704)	1696년	1652~1692	'謄錄'만을 활용
海外聞見錄	宋廷奎(1656~1710)	1706년	1611~1706	기록류 및 인터뷰 활용
耽羅聞見錄	鄭運經(1699~1753)	1731년	1687~1730	주로 인터뷰를 활용

이익태는 『知瀛錄序』에서 “일기를 편집하고 謄錄을 참작하면서 그 사이에 내 뜻을 붙였다.”²⁷⁾고 말하였다. 일기를 활용했다는 것은 『지영록』의 전반부를 두고 하는 말이고, 표류 사건을 기록한 후반부는 전적으로 ‘등록’을 참작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사이에 자신의 뜻을 붙였다고 하였지만, 표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 없다. 게다가 다루고 있는 표류 사건도 자신이 재입하기 전의 것들만을 기록하였다. 이익태가 『지영록』의 후반부에서 표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제주 관아에 보관된 ‘등록’류가 민멸되기 이전에 책자로 만들어 두어야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짐작된다.²⁸⁾

정운경은 표류를 경험했던 인물들을 저자가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탐라문견록』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관찬 사료에 잡히지 않는 사건이라든가 여타 흥미로운 異國의 사실들이 풍성하게 기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술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류의 경위를 기록하고, 조선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국의 풍물을 ‘기록’하는 데에서 작가의식은 멈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송정규의 『해외문견록』은 작가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송정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는 분명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李益泰, 『知瀛錄序』. “編以日記, 參酌謄錄, 間附己意, 名曰知瀛”

28) 위의 글. “惜乎, 耽羅內附之前, 文獻不足, 事蹟未詳, 則邈矣莫徵”

…… 중국인이나 왜인이 표류한 사건이 많았는데, 혹은 뿔감과 물을 찾기도 하고 혹은 배를 수리하고 떠나기도 하였다. 그 문답에 볼 만한 것이 없으면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다.²⁹⁾

여기서 말하는 ‘문답’은 관아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측의 問情 자료일 것이다. 『지영록』에서도 이러한 문정 자료를 자세히 옮겨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송정규는 그러한 문정 자료 가운데서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면 『해외문견록』의 저작에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송정규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은 다음의 언급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여회의 本錄을 살펴보니 山川과 物産에 대해서는 소략하여 매우 안타까웠다.³⁰⁾

김여회는 1663년 오끼나와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왔던 인물인데, ‘本錄’은 필시 김여회 자신이 남긴 표류기였을 것이다.³¹⁾ 『해외문견록』에는 김여회가 오끼나와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으며, 어떤 인물들을 만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정작 송정규는 오끼나와의 ‘산천과 물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안타까웠던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해외문견록』의 저술 의도가 ‘산천과 물산’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였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은 ‘경제적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이다.

29) 『順治以後漂商問答』. “前後漢倭之漂到者多矣, 或覓柴水, 或理船具而過去, 其所問答, 無可聞者, 不錄於此.”

30) 『記琉球漂還人語』. “按麗輝本錄, 略於山川物産, 可恨也.”

31) 김여회의 표류사건은 成海應의 『蘭室譚叢』과 李圭景의 『定水帶辨證說·北蕃辨證說』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문장에 유사한 표현이 많다. 아마도 김여회의 ‘본록’을 채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강희 병술년(1706) 정월 산동 사람 車瑄 등 13인이 표류하여 대정의 서림 포에 이르렀다. ……차관 등은 농사와 장사 이외에 별로 이는 바가 없어 그들이 사는 산동 지역의 조세 제도에 대해 물었다. …… 公役은 매 丁이 해마다 은 1전6푼을 바친다. 10세에 丁이 되고 60에 면하며, 5년마다 호구조사를 통해 丁籍을 작성하는데 빈자와 부자를 막론하고 모두 수록한다. …… 모든 세금은 은전으로 납부하며 布穀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천자로부터 王后와 百官 胥吏에 이르기까지 모두 은전으로 봉급을 받아 그것으로 옷이며 음식과 바꾼다. 또 80이 넘은 백성들에게는 관가에서 해마다 은 3냥, 명주 1필, 비단 옷 1벌을 지급하며, 흉년이 들어 구휼할 때면 대달 농부들에게는 쌀 70椀, 아동들에게는 24椀의 건량을 헤아려 지급한다. 차관등이 곡식을 헤아릴 때 椀의 단위를 쓴 것은 대개 산동의 升이 너무 커서 우리나라의 斗와 같기 때문이었다. ……³²⁾

‘산동 사람 車瑄’은 송정규가 직접 문정을 하였던 인물이다. 송정규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인 ‘조세제도’, ‘구휼제도’, ‘도량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정보를 입수하였음을 위 인용문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대포를 다루는 방법은 반드시 대포를 수레 위에 안치해서 방포하니, 비단 높이고 낮추며 회전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대포를 발사함에 수레바퀴가 저절로 뒤로 굴러가서 대포의 반동하는 힘을 줄이며 대포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준다. 裝藥은 대포가 8근, 중포가 6근, 그 다음 중포가 4근이요,

32) 『山東漂商』, “康熙丙戌正月, 山東人車瑄等十三人, 漂至大靜西林浦……瑄等農商之外, 無所聞識. 故就問所居山東田賦之法……身庸則每丁歲收銀一錢六分, 十歲爲丁, 六十而免, 每五年審戶 造丁籍, 無論貧富, 一例收之……凡稅悉以錢銀, 不用穀布. 故自天子王侯百官吏胥, 皆以俸錢, 貿易衣食. 又民年八十者, 官家歲給銀三兩絹一疋錦衣一套, 年飢賑救則每月農夫米七十椀, 兒童二十四椀, 皆以乾糧計給矣. 瑄等凡量粟以椀計者, 蓋以山東之升太大, 與高麗斗一樣云.”

조총은 9전이다. 조총은 납 탄환을 쓰는데 그 무게는 8전이다. 철사로 2~3의 탄환을 이어서 발사하는데 목표에 닿으면 곧 하나로 합쳐진다. …… 조총은 周尺으로 길이가 5척 7촌이요, 둘레는 몸통이 6촌이요, 끝은 4촌이이니 그 구경은 1촌이다. 귀는 넓이가 1촌 5푼이요, 길이가 2촌인데 귀에는 덮개와 마개가 있어 함께 하나의 장치가 되는데 모두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으며 화기는 안쪽을 향해 있다. 끝에 표시가 되는 쇠붙이를 달아 놓으니 그 크기가 작은 녹두와 같고 몸통에는 가운데를 자른 쇠붙이를 달아두어 그 잘라진 틈으로 가늠하게 되어 있으니 그 교묘함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장통이 없어서 그 제도를 상세히 할 수 없다. 장검은 자못 일본 창의 제도와 비슷하니, 창의 자루는 오동나무 가지보다 가벼운데 질겨 끊어지지 않아, 무고에 보관한 지 50여년이나 또한 좀먹거나 상하지 않았다.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겠다.³³⁾

이 인용문은 하멜에 대해 기록한 『서양표만』에서 하멜 일행의 무기류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여기서 대포를 기술한 부분은 송정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 의지한 것인지 확실치 않은 점이 있지만, 문맥을 통해 볼 때 조총과 같은 송정규가 직접 실측한 것이 틀림없다. 특히 조총의 가늠자와 가늠쇠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송정규의 글쓰기는 대단히 인상적이며, 외국의 무기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송정규의 경제적 관심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십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송정규는 이와 같은 경제적 관심에서 『해외문견록』을 저술하였던 것인

33) 『西洋漂蠻』. “其火礮之法, 必安礮車上而放之, 不但低仰周旋之爲便, 礮之發也, 輪自退轉, 殺其後蹙之勢, 免致筒裂. 粧藥則大礮八斤, 中礮六斤, 次中礮四斤, 鳥銃九錢. 鳥銃則鉛丸重八錢, 以鐵絲連綴二三丸而發之, 中輒同穴 …… 其中鳥銃, 以周尺 長五尺七寸, 圍本六寸, 梢四寸, 口徑一寸, 耳廣一寸五分, 長二寸, 耳有盖有障, 共爲一樞, 皆可離合, 火機向內, 而點標鐵之在梢者, 小如菉豆, 在本者中割橫鐵, 從割痕而闕之. 其巧妙多出人意, 而今存者, 皆無粧筒, 不可詳其制矣. 長劍頗似倭制, 槍幹輕於桐枝, 韌而不折, 庫藏五十餘年, 而亦不蠹損, 不知何木也.”

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저술에 임했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신년(1704) 가을 내가 탐라에 이르렀을 때 金泰璜은 이미 죽었기에 李德仁 등을 불러 묻고 김태황의 實記와 本州의 옛 기록을 참조하여 그 始末을 갖추어 기술하였다.³⁴⁾

이 언급을 통해, 송정규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를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하고, 그들이 남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공문서를 참조하는 등 자료 수집을 위해 각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멜 일행 표류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제주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하멜 일행의 무기류를 자신이 직접 상세히 조사하기도 하였음을³⁵⁾ 상기해 보면, 송정규의 저술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작가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자료에 대한 비판적 자세이다. 『해외문견록』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徐判官斬蛇」는 표류 관련 내용이 아니긴 하나, 다음의 언급은 송정규가 어떤 자세로 자료를 대하느냐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산서씨 족보를 살펴보니 그 기록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제주의 선생안에는 徐隣 判관이 임소에 온 지 삼년만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 …… 이 기록과 조금 차이가 난다. 또 서군이 죽은 지 6년 뒤에 冲菴 金淨이 귀양살이 와서 빠뜨림 없이 제주의 풍속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위

34) 『記安南漂還人事』, “甲申秋, 余至耽羅, 泰璜已死, 招問德仁等, 參以泰璜遺記及本州故實, 備述其始末焉.”

35) 『西洋漂纘』, “其巧妙多出人意, 而今存者, 皆無枉簡, 不可詳其制矣.”

대한 사적이 있었다면 충암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바가 굉장할 뿐만 아니었을 터인데 그의 문자에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 점이 의심스럽다.³⁶⁾

『徐判官斬蛇』는 제주 백성을 괴롭히던 큰 이무기를 판관 서련이 용감하게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기록을 송정규는 연산서씨 족보에서 접하였지만, 다른 기록과의 어긋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소박한 수준이나마 송정규는 합리성에 기반한 사료 비판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해외문견록』은 문장 구성의 차원에서도 작가의 세심한 안배를 발견할 수 있다. 『해외문견록』은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구성한 것이지만, 視點과 話法의 통일성을 기하여 사건의 설명과 묘사에 있어 마치 작자가 직접 보고 겪은 것처럼 읽히도록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단이 그러하다.

그 배의 모습을 보니 높고 커서 보통 배가 아니었으며, 배 위에 촘촘히 서 있는 자들이 무려 백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이가 육십 가량 되었는데 綠袍를 걸치고 黑傘을 펼치고는 뱃머리에 앉아 배를 지휘하고 있었다. 아군은 그 배를 놓칠까 염려하여 좋은 말로 꺾어 별도포구로 유인해 여러 배로 에워싸서 퇴로를 막아버리고는 精兵 천여 명을 언덕 뒤에 매복시켜 두었다. 이튿날 새벽 약속된 포 소리를 신호로 수군과 육군이 일시에 협공하였다.³⁷⁾

36) 『徐判官斬蛇』. “按連山徐譜, 所記如此, 而濟州先生案, 判官徐憐到任三年而卒, ……與此記略有參差. 且徐君卒後六年 而冲菴謫來, 備述土風, 不遺微細. 若有異事偉迹果如此錄, 則耳目所逮, 不翅赫赫, 而其文字間 不少概見, 何歟? 是可疑已.”

37) 『別刀剿倭』. “觀其船制, 高大異常, 船上簇立者, 無慮百餘, 其中一人, 年可六十者, 着綠袍, 張黑傘, 坐船頭, 號令一船. 我軍慮其失捕, 即以好語誘致於別刀浦口, 環列諸船, 攔阻去路, 伏精兵千餘於岸後, 約翌早聞號砲, 水陸軍一時挾擊. 彼亦放砲拒戰, 船

이 문단의 원문은 그 字數가 ‘4,4,5/4,4,5/3,3,3’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정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데 古文의 응축된 글쓰기와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着綠袍, 張黑傘”의 구절에서는 색채를 대비시키는 수사가 활용되고 있음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송정규는 『해외문견록』을 집필함에 있어 문장 형식의 측면에서도 일정하게 고려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그리고 『해외문견록』의 문장을 논함에 있어 남극관의 평가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남극관이 고평하였던 ‘선박 제도의 기록’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船의 몸체는 머리는 바닥이 뾰족하고 꼬리는 넓게 들려 있으며, 옆구리가 불룩하고 등이 높으니 바닥은 좁고 가운데는 너적하다. 그 건조법은 나무가 서로 겹치는 곳에는 모두 쇠못을 魚油에 불려 안쪽과 바깥쪽에서 함께 박는다. 목판은 單葉으로 된 것을 쓰는데 너비가 4,5척이고 두께가 2,3척이며 길이가 짧은 것은 나무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반드시 배[腹]는 넓고 끝은 좁게 하니 그 형세가 마치 뒤집어 놓은 활과 같다. 매 한 길[尋]마다 반달 모양의 기둥을 끼워서 세우고 별도로 큰못으로 기둥의 뿌리를 목판에 고정한다. 두께가 4,5촌 되는 삼나무 판자를 船首로부터 양 옆에까지 기둥 바깥쪽에서 연달아 붙인다. 좌우 기둥의 안쪽 면을 뚫어 가로로 판자를 들여 칸칸을 막으

板兩重, 極其牢緻. 故我軍放將軍箭, 而僅穿外板. 良久, 酣戰而不能破, 軍官魏公濬·格軍彥千等, 逢丸而死. 乃以火箭亂射彼船, 多擲乾草, 煙焰漲起, 倭始大窮, 或自殺, 或燒死, 勇者或揮劍泳出, 而亦被岸上人射殺. 凡斬三十九級, 燒死八十三人, 收其兵器, 入武庫.”

38) 이러한 판단에 있어 한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는, 이러한 글쓰기의 특징이 혹시 원자료에 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해외문견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해외문견록』의 문장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견지되고 있어, 인용한 대목의 문장 특성 또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니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그렇게 한다. 그 위의 빈 공간에 나무로 뼈대를 삼아 판자를 붙여 방을 만든다. 매 칸의 옆쪽으로 구멍 하나를 내어 여닫이 판자를 달아 사람이 출입하도록 한다. 가장 가운데 한 칸은 그 절반을 막아 물통으로 쓰니 위쪽에서 물을 길게 된다. 그 곁의 한 칸에는 흙으로 방을 만들어 취사도구를 들인다.……39)

『周禮』 ‘考工記’를 연상케 하는 글쓰기라 할 수 있으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선박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와 유사한 저술로 旅菴 申景濬(1712~1781)의 『論兵船火車諸備禦之具』(『旅菴全書』 卷18)⁴⁰⁾가 참고가 되는데, 신경준의 이 글 또한 선박의 구조에 대해 기술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한국 한문학에 있어 독특한 양식의 흐름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해양의 시대를 대비한 해안

앞 절에서는 송정규가 ‘경세적 목적’으로 『해외문견록』을 저술했음을 논했는데, 경세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송정규가 『해외문견록』을 통해 특히 관심을 두었던 문제는 바로 ‘해외무역’이었다고 보인다. 『해외문견록』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던 해상무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특히 표류한 상인들에 대한 기사를 모아 놓은 ‘順治以後漂商問

39) 『唐船制』. “唐船之體, 首尖低而尾開舉, 張脅隆脊, 狹底闊中. 其造法, 凡木之相接處, 皆以鐵釘淬魚油, 表裏交榘之. 本版用單葉, 廣四五尺, 厚二三尺者, 長不足則連木爲之, 必令腹廣梢殺, 勢如仰弓. 每一尋, 夾立一柱如偃月形者, 別以大釘釘着柱根於本版. 以杉版厚四五寸者, 從柱外連附於船首 及兩脅. 鑿左右柱之內面, 橫納以版, 間間隔塞, 自首至尾, 皆然. 其上空處, 以木爲脊, 鋪版爲屋, 每間脊傍, 作一穴, 用蓋版開閉, 以通人之出入. 正中一間, 隔其半, 爲水函, 從上汲用. 其傍一間上, 作土室, 安爨具.”

40) 이 자료에 대해서는 김재근(1984), 137~184면 참조.

답'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

그들 가운데 산서·섬서·산둥 등지의 사람들은 각각 藥材, 棗蠟, 氈毯 등과 같은 토산물을 蘇州의 시장에다 팔아, 비단과 은자로 바꾸어 다시 交趾로 가서 팔고는 胡椒, 蘇木, 檀香, 牛皮, 糖藤과 같은 물건을 구입하여, 일본 長崎에 가서 人參, 銅鐵, 海參, 黃鼠, 赤狐, 象牙, 香芫, 烟草 등의 물건과 바꾸어 다시 소주로 돌아가 파는데, 소주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개 繭絲, 紬緞을 밀천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소주와 장기는 동쪽과 서쪽의 도회로서 천하의 물산들이 두 곳으로 모여드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었다.⁴¹⁾

2.

“저희들은 大明 복건의 官商船으로 白糖, 鹿皮, 蘇木, 紬段, 藥材 등의 물건을 싣고 일본으로 가서 팔려고 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東寧에서 출항하여 23일 밤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여 귀국에 이르게 된 것인데, 암초에 부딪혀 배는 부서지고, 물품들은 대부분 바다의 신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원컨대 남은 물품을 바치겠으니,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배로 저희들을 일본 籠仔沙箕(나가사키)로 보내주시면, 長岐王을 만나 배를 만들어주기를 청할 것이니, 그리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⁴²⁾

41) 『順治以後漂商問答』, “夥內山西陝西山東等地人, 則各以土產, 如藥材棗蠟氈毯等物, 賣於蘇州市, 貿紬綾銀子, 轉販於交趾, 得胡椒蘇木檀香牛皮糖藤之屬, 往日本長崎, 貿人參銅鐵海參黃鼠赤狐象牙香芫烟草等物, 還鬻於蘇州. 其自蘇州直往日本者, 多以繭絲紬段爲本. 可見蘇州長崎爲東西都會, 而天下之物湊於二處矣.”

42) 『順治以後漂商問答』, “以大明福建官商船, 載白糖鹿皮蘇木紬段藥材等貨, 往販於日本. 五月十一, 自東寧開駕, 廿三夜遇颶風, 漂到貴國. 觸礁船碎, 貨物多付波神, 願奉餘物, 蒙好生之德. 遣船載送於日本, 籠仔沙箕見長岐王, 請料造船, 得還本國.”

3.

“저희들은 본디 大明의 광동, 복건, 절강 등지의 사람들인데 淸兵이 이 성들을 함락하자 香山島로 도망해 들어가서 장사로 먹고 살았습니다. …… 香澳는 광동의 바다 밖에 있는 큰 산으로 淸黎國에 이웃해 있으니, 본래는 南蠻의 땅이었습니다. 蠻人 甲必丹이 들어와서 주인노릇을 하였는데, 후에 만인의 세력이 쇠약해져 지금은 겨우 30여명이 남아있습니다. 명나라 유민들이 세상을 피해 그곳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大樊國에서 遊擊 何貴를 보내 납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장사를 하는 香山島 사람들은 모두 大樊國국의 패를 받아 船稅를 내지만, 조공하는 일은 없습니다.”⁴³⁾

4.

“강희 24년(1685) 천하가 태평해졌기에 육부에서는 황제에게 아뢰어 연해의 여러 나라들에게 비로소 통상을 허용하고 항구마다 관청을 두어 세금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 60냥을 세금으로 바치고 印表를 받고서 紬緞, 白絲, 花毯, 藥材 등을 싣고 일본으로 가서 팔려고 하였습니다.”⁴⁴⁾

5.

“대만은 귀국의 남쪽에 있으니 14일이면 이를 수 있고, 복건성은 15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낮밤이면 이 섬에 갈 수 있습니다.”⁴⁵⁾

43) 『順治以後漂商問答』. “本以大明廣東福建浙江等地人, 淸兵既下諸省, 俺等逃入香山島, 興販資生. 以今年五月初一, 開船于香澳, 將向日本長崎, 廿三遭風, 漂到於此. 所謂香澳, 乃廣東海外之大山, 淸黎國之隣界, 本南蠻地也. 蠻人甲必丹來主其地, 後蠻人衰弱, 僅存三十餘人, 明人之避世者, 多入其中, 自大樊國遣遊擊何貴者, 主管納稅……香山島人行販者, 皆受大樊國牌, 納船稅而無朝貢之事.”

44) 『順治以後漂商問答』. “康熙二十四年, 因天下太平, 六府議奏, 沿海諸國, 始許通商, 海口每處, 置官收稅. 故俺等納稅銀六十餘兩, 受印表, 載紬緞白絲花毯藥材, 欲販於日本.”

45) 『順治以後漂商問答』. “臺灣正在貴國之南, 四日可至, 福建省十五日可至, 日本一日一夜, 可至此島.”

1번 기사는 1652년 2월 제주에 표류한 소주의 상인 苗珍實이 진술한 내용으로, ‘중국 내륙’, ‘소주’, ‘베트남’, ‘일본’으로 연결되는 4각 무역 루트가 소개되고 있어 흥미롭다. 2번 기사는 1667년에 표류한 林寅觀의 진술로, 역시 그 또한 일본과 복건을 익숙하게 왕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번 기사는 1670년에 표류한 沈三의 진술인데, 마카오[澳門]가 포르투갈에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사실과 당시 鄭成功이 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4번 기사는 1687년 清朝의 ‘천계령’이 풀린 뒤 청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상행위의 허가를 받고 바다에 나왔다가 표류한 顧如商의 진술이며, 5번 기사는 1705년에 표류한 대만상인의 진술로, 당시 바닷길에 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순치이후 표상문답’에는 당시 어지러운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해상무역은 나름대로 꾸준하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을 전하고 있다. 또 『記安南漂還人事』에 나오는 다음의 대목도 무역의 효용을 언급하고 있다.

(안남에서는) 삼베와 모시가 없었는데 모시풀은 산 가까이 습하지 않은 땅에서 자라 일 년이면 여섯 차례 거둔다. 뱃사람들은 그것으로 밧줄을 만드는데 土人들은 길쌈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은 모시 한 필로 안남의 花段 두 필을 바꾸어 간다. 안남에서는 모시의 귀함이 이와 같다.⁴⁶⁾

이 인용문의 바로 위에는 베트남의 양잠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비단보다 모시가 더 비싸기에 중국 상인들이 모시를 들여와 이문을 취하고 있는 사정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46) 『記安南漂還人事』, “無麻布苧布, 苧則生於近山不濕之地, 一年六取, 船夫爲索, 而但土人不知績治之法. 中國商人, 以苧布一疋, 來換花段二疋, 其貴如此.”

송정규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간에는 해외 교역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류한 서양 오랑개는 모두 장정들이지만 또한 십여 세의 아이도 몇이 있었다. 장사로 바다를 왕래한 횡수를 말하는데, 중국에 갔던 것이 세 번이요, 일본에 갔던 것이 일곱 번이라 하기도 하였다. 대저 서양과 일본은 하늘 끝의 두 모퉁이로 한쪽에서 해가 뜰 때 다른 쪽은 해가 지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웃마을을 보듯이 여겨 번다함을 마다하지 않고 강보를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천하에 이와 같은 풍속의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다.⁴⁷⁾

“함께 맹서를 지켜 변치 말아 상인들이 왕래하면, 해마다 재화가 산처럼 쌓이고 샘처럼 솟으리니 이는 실로 양국에 만세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⁴⁸⁾

앞의 인용문은 하멜에 대해 기록한 ‘西洋漂蠻’의 말미이고, 뒤의 인용문은 ‘別刀剿倭’에서 안남의 ‘華郡公’이 일본의 ‘藤原家大將軍’에게 보낸 서신의 한 대목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송정규는 ‘해가 뜨고 지는’ 대양을 건너 무역에 나서는 ‘蠻人’들을 ‘敬歎’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송정규는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진취적 태도에 감탄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대양을 가로 지르며 행하는 무역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뒤의 인용문도 아무 뜻 없이

47) 『西洋漂蠻』, “漂蠻年皆丁壯, 亦有十餘歲兒數人, 而自言行商往來之數, 至中國者三, 至日本者七. 夫西洋之於日本, 極天兩隅, 窮日出沒, 而此輩視若隣井, 不憚頻繁, 才離襁褓, 便涉滄溟. 穹壤間土風人習, 有如是者, 吁亦異哉.”

48) 『別刀剿倭』, “共守盟誓, 磨而不磷, 販商徠往, 年歲財貨, 浩若丘泉, 寔兩國萬世之利也.”

송정규가 옮겨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언급 속에 송정규의 진의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중국배들이 여러 차례 표류하여 왔기에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국배의 법식을 두루 물어 여기에 기록해 두니 앞으로 당자들이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대비하려는 것이다.⁴⁹⁾

앞서 소개한 ‘唐船制’의 말미이다. 이 인용문에서 송정규는 앞으로 조선에서도 중국식 배를 만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정규는 왜 중국식 배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이는 필시 당시 조선의 선박이平底船이기에 원양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송정규가 이처럼 세밀하게 중국 배의 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기술하였던 것은 결국 해외 무역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송정규의 관심은 바다 밖으로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해외문견록』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송정규의 안목은 실학과 학자들과 견주어도 매우 그 시기가 이른 편인만큼, 앞으로는 이에 대한 학계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맺음말

『해외문견록』은 작자의 직접경험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작자가 표류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취재하여 엮은 2차적 성격의 표해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작자 송정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자

49) 『唐船制』, “唐船之前後漂來者, 濟人亦多見之. 故參詢其法, 附錄于此, 以備任事者伐柯之則焉.”

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 뚜렷한 서술 목적을 관철해 낼 수 있었다. 송정규는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술된 『해외문견록』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표해록류의 저술 가운데 『해외문견록』처럼 뚜렷한 저술의식을 지니고 있는 다른 예는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해외문견록』은 표해록의 범주를 넘어서 사상사의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학의 鼻祖라고 일컬어지는 柳馨遠이 태어난 해는 1622년이며, 송정규는 그로부터 한 세대 뒤라 할 수 있는 1656년에 태어났다. 그로부터 또 한 세대가 흘러 1681년에 李瀾이 태어났다. 앞에서 송정규의 생애를 검토하며 그의 학문적 성향이 ‘실용 위주’임을 확인했던바, 송정규는 당시 태동하기 시작한 실학이라는 시대정신에 공명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학자들 가운데 申景濬(1712~1781)은 앞서 소개하였듯이 『論兵船火車諸備禦之具』를 저술하여 軍船의 개량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폈고, 朴齊家(1750~1805)는 『北學議』에 실린 『通江南浙江商舶議』에서 해외 통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李綱會(1789~?)는 『雲谷叢書』와 『柳菴叢書』에서 외국 선박의 상세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또 표류를 당해 필리핀과 마카오까지 다녀온 文淳得의 이야기를 수록하는 등⁵⁰⁾ 실학과 내부에서 해양의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송정규의 『해외문견록』은 이처럼 해양의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사상적 학술적 흐름에 놓고 살펴야 그 의의와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고 본다. 특히 송정규의 생년이 신경준보다 두 세대쯤 앞선 17세기 중반이라는

50) 이강희의 학문에 대해서는 임형택(2006) 참조.

점을 고려한다면, 『해외문견록』이 지닌 학술사적 의의는 더욱 각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문견록』은 해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조선후기 학술적 사상적 흐름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宋廷奎, 『海外聞見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복본).

『礪山宋氏正嘉公派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益泰 저, 김익수 역(2006), 『知瀛錄』, 제주문화.

鄭東愈 저, 남만성 역(1974), 『晝永編』, 을유문화사.

鄭運經 저, 정민 역(2008),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崔斗燦 저, 박동욱 역(2011), 『乘槎錄』,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표류기』, 휴머니스트.

崔溥 저, 서인범·주성지 역(2004), 『漂海錄』, 한길사.

강준식(2002),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웅진닷컴.

김재근(1984), 『한국선박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유인선(2007),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윤치부(1993), 『한국해양문화연구』, 학문사.

김동욱(2004), 「『琉球國世子』이야기의 流變樣相」,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민덕기(2001),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한일관계사학회, 국학자료원.

박현규(2001), 「광해군조 琉球 세자 사건과 절명시 감상」, 『동방한문학』 20, 동방한문학회.

임형택(2006), 「다산학단에서 해양으로 학지의 열림 : 이강희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5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하우봉(1999), 「문물 교류와 상호 인식」, 『조선과 유구』, 아르케.

松原孝俊(1991), 「朝鮮における 伝説生成のメカニズムについて - 主に琉球王子漂着譚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137, 朝鮮學會.

〈Abstract〉

Position and Value of 『Overseas Travelogue(海外聞見錄)』
from a Perspective of Pyohaerok(漂海錄) Tradition

Kim, Yong-tai*

The Overseas Travelogue in the possession of Tenri University of Japan is Pyohaerok authorized by Song Jeong-gyu(1656~1710) after he was assigned to serve as the governor of Jeju in 1704. The Overseas Travelogue describes ships drifting incident that occurred off Jeju from the early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Compared with other ship drifting records and other data, Pyohaerok encompasses ample information, offering highly valuable materials. For instance, in connection with the presumed homicide of Prince Yugu (Okinawa) in 1611, the Overseas Travelogue describes a diplomatic document that Vietnam sent to Japan, and this document is not mentioned in other materials. Also, in connection with the Hamel's Account of the Voyage in 1653, Song Jeong-gyu detailed the weapons of the Hamel-led travellers which were kept at the Jeju government office, after he personally observed them. This description can be found only in the Overseas Travelogue.

In addition, the Overseas Travelogue describes details of Chinese ship structures,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s conducted in southern China, Vietnam, Japan and Taiwan. At that time, Joseon strictly banned non-governmental overseas trade, but by writing the book, Song Jeong-gyu probably believed that the country must prepare for the opening of marine era someday.

Such foresight was tens of years ahead of that of Park Je-ga (1750~1805) who recommended to conduct overseas trade by writing Bukhakuji

* Prof of SKKU. E-mail: kyt9155@daum.net

(Observations of Qing China Civilizations) (1778). As such, his foresight should be rightly evaluated by the academia.

Key words : the overseas Travelogue(海外聞見錄), Song Jeong-gyu(宋廷奎), pyohaerok(漂海錄), Hamel.

본 논문은 2011년 10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1월 23일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10일 게재를 확정하였음.

K C I

КСІ